

- 201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-

행정사무감사 계획(안)



2017. 5.

행정건설위원회

201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

의 안	
번 호	

제안일자 : 2017. 5.

제 안 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,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,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·개선함으로써 구민편익을 증진하고,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,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자치입법 활동과 2017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한다. (2017. 6. 2 ~ 2017. 6. 10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 공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안전행정국, 기획경제국, 교통건설국 및 동 주민센터,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(8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실, 동 주민센터로 한다

3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4768호, 2017. 4. 18) 제41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6882호, 2017. 1. 1)
제39조~제50조, 제52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제5조 등

201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,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,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,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2017. 6. 2(금) ~ 2017. 6. 10(토) [9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- 마포구 (공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안전행정국, 기획경제국, 교통건설국)
- 동 주민센터
-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사위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행정건설 위 원 회	행정건설 위원회 위원 전원 (8명)	공보담당관	행정건설 위원회실	유준상	조진남
		감사담당관			
		안전행정국			
		기획경제국		송인수	신영자
		교통건설국			
		동주민센터	해당 동주민센터		
		마포문화재단	행정건설 위원회실	유준상	조진남
		마포구시설관리공단			

5. 감사일정

일 정	내 용	비 고
2017. 6. 2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	
2017. 6. 5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무 과 - 자치행정과 - 문화진흥과 - 관 광 과 - 민원여권과 - 전산정보과 - 청소행정과 	
2017. 6. 7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 예산과 - 일자리경제과 - 재 무 과 - 징 수 과 - 세 무 1과 - 세 무 2과 	
2017. 6. 8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○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○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○ 마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	
2017. 6. 9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통행정과 - 교통지도과 - 건설관리과 - 토 목 과 - 치 수 과 - 부동산정보과 ○ 감사종료 선언 	

6. 감사요령

감사는 공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안전행정국, 기획경제국, 교통건설국의 각과 및 동 주민센터,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별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감사 진행순서

- 가. 감사실시 선언
- 나. 위원장 인사
- 다. 증인선서
- 라. 피감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
- 마. 업무보고 청취
- 바. 질의 · 답변
- 사. 감사종료 선언

8. 행정사항

- 가.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.
- 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

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(증인) 출석요구서

마포구청장,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,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

마포구의회가 2017년도 마포구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, 관계공무원(증인)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.

- 서류제출 요구 : 요구서류 목록 수합하여 제출기한 지정 별도통보
- 관계공무원(증인) 출석요구

1. 출석일시 :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정일시

2. 출석장소 :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지정장소

3. 출석대상

가. 공보담당관 : 공보담당관

나. 감사담당관 : 감사담당관

다. 안전행정국 : 안전행정국장, 총무과장, 자치행정과장, 문화진흥과장,
관광과장, 민원여권과장, 전산정보과장, 청소행정과장

라. 기획경제국 : 기획경제국장, 기획예산과장, 일자리경제과장, 재무과장,
징수과장, 세무1과장, 세무2과장

마. 교통건설국 : 교통건설국장, 교통행정과장, 교통지도과장, 건설관리과장,
토목과장, 치수과장, 부동산정보과장

바. 동 주민센터 : 감사대상으로 지정되는 동 주민센터의 동장

사. 마포구시설관리공단 : 이사장, 상임이사, 경영기획팀장, 시장사업팀장,
주차사업팀장, 공공시설안전1팀장, 공공시설안전2팀장,
윤리경영팀장, 문화복지사업팀장, 안전감사팀장

아. 마포문화재단 : 대표이사, 운영관리본부장, 사업기획본부장

* 기타 해당기관 부서별 팀장 및 해당직원 등 포함. 끝.

2017년 5월 일

행 정 건 설 위 원 장

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

(행정건설위원회)

연번	요 구 자 료	요구의원	소 관 과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

서류제출요구서

결 재	담당	부위원장	위원장
협조	전문위원 : 전문위원 :		

마포구청장 귀하

마포구의회가 2017년도 마포구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서류제출 요구목록 : “별첨”
- 제출기한 :
- 제출장소 :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- 제출부수 : 각 35부

2017년 5월 일

행정건설위원장